

사건보도와 자성점

신동호

조선일보 논설주간

1. 서언

사건보도와 인권에 관련된 문제는 그동안 언론계와 학계에서 많은 연구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론적으로 새로운 주장을 할 것도 없고 실제로 새로운 사태의 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시정되어야만 한다는 당위론이 그간에 속속들이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도 되지 않았음을 매스컴의 사건보도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본고는 증언부언의 효과와 역할에 그친 바는 전제와 돌파구를 미리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어느 한 사건을 모델로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케이스 스터디를 시도하길 피했으며 외국과의 사례대비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 가운데 내 나름의 의견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먼저 사건보도의 내용에 대한 정의를 뚜렷이 해둘 필요가 있다. 광의로 해석하자면 자치적사건이나 경제적 사건도 포함시킬 수 있다. 연초에 중앙의 일간지들은 제 3 공화국시대의 정치비화와 경제의혹사건 등을 다룬 기획물을 연재했다. 이미 역사물이 된 과거를 서술할 때 아무리 살아있는 증언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완벽한 객관화를 기하기는 어렵고, 또한 기술하는 시점의 정치적·사회적 상황변화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각지의 경쟁적인 과열 보도 끝에 어떤 연유에서였던지 간에 거의 때를 같이하여 용두사미격으로 중단하였다. 알려지기로는 보도된 내용에 관해서 이해 당사자의 항의, 변명, 정정요구 등이 많았다고 한다. 이미 고인이 되었거나 또는 살아있는 명사 중에서는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고 믿어진다. 비단 범죄사건이 아니더라도 매스컴을 통하여 개인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는 사건은 흔히 있을 수 있다.

고의적인 범죄성이 전혀 없는 단순한 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그것이 보도됨으로써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보도하여야 할 가치 있는 뉴스는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보도내용이 될 것이냐는 새로운 논란거리가 대두된다.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컴에서 뉴스로 다루고 있는 많은 기사 중에는 그것이 공표됨으로써 공공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이익은 주지않더라도 흥미를 주게 되면 뉴스로서 보도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오늘날 통설이다.

범죄와 관련된 많은 뉴스들이 신문독자나 방송의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또한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최대다수인에게 최대의 흥미를 주는 것이 최상의 뉴스다」라는 정의도 내려지고 있다. 여기에서 「최대의 흥미」를 위해 상업주의적인 배려가 지나치게 될 때 잡음과 부작용이 일어나게 됨은 너무도 당연하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뉴스로서 만들어지고 가공되어 최대의 흥미가 담긴 사건보도가 문제인 것이다.

수사가 진행중인 범죄사건은 흥미요소를 자극하기에 가장 알맞은 뉴스소재인 것이고 사건발생에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을 거쳐 단죄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추적기사화 한다. 나라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사법 또는 보도기관이 이 같은 사건을 다루는 패턴은 틀 속에 박힌 듯 비슷하기 마련이다. 선입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가 어렵듯이 한국형 범죄사건보도의 정형을 부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수사가 인권을 존중하고 과학적인 합리수사로 물증확보에 주력해야만 범인을 구속 송치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와 방법도 대전환을 요구하게 됐다. 세상은 달라져 가고 있는데도 언론은 옛 그대로라면 낙후될 것은 당연하다. 80 년대에 들어와서 이같은 보도에 있어서의 후진성을 절감하는 사례를 직접 겪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몇 가지 사건보도를 통해서 피의자의 인권문제를 부각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언론의 후진성, 보수성, 고루완고성에 통하는 것이며 유아독존적인 아집을 해부하는 것과도 같다 할 것이다. 어느 특정 보도기관의 한때의 잘못이 아니라 주로 중앙일간지들이 보편적으로 저질러온 사례를 최근의 범죄사건에 접혀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이인삼각형 수사와 보도의 공조체제

어느 사건이 보도대상에서 외면당할 때와, 그와 반대로 연일 보도되어 여론의 주목과 감시를 받게되는 경우를 상정할 때 그 경과과정이나 결과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매우 의심스럽다. 범죄사건의 경우, 발생자체가 결과로서 끝나는 수도 있지만, 추궁해 들어감에 따라 자생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흔하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몇 가지 사건에서 이런 실례를 쉽사리 찾을 수 있다. 만일 신문이나 방송에서 뉴스로 전혀 다루지 않고 묵살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결말이 뻤겠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건수사와 보도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공동운명체와 같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가 영향을 끼쳤고 그로 해서 사건은 발전하고 변모하게도 된 것이다. 수사의 잘못은 곧 오보가 되었다.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는 그대로 보도매체를 통해 다시 한번 더 유린되기도 했다. 이처럼 이인삼각과 같은 수사과 보도의 공조체제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본다.

1. 이철희, 장영자 어음 사취사건

8월 9일 서울형사지법에서 32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수사착수 후 105일, 이-장부부 구속 후로 96일만에 선고된 셈이다. 이-장 두 피고인은 법정최고형인 15년, 이규광 피고인은 아른수재죄를 적용 4년이 선고됐다. 또 임재수 전 조흥은행장은 7년, 공덕종 전 상업은행장은 4년이 선고되었고, 무죄는 한 사람도 없는 준엄한 선고였다.

이 선고는 7월 2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각 피고인의 구형량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검찰의 논고문 가운데 서언부분은 그대로 최대의 보도가치가 있는 사건기사였음을 대변해 주고있다.

「... 그들의 신분자체만으로도 세인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였고... 급기야는 경제의 일각을 뒤흔들어 우리 모두를 허탈감에 빠지게 하는 미증유의 대사건이 되었으며 여기에 각종 악성 루머까지 끼어들어 배후 및 정치 자금과 관련된 온갖 억측이 난무함으로써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집중시키는 최대의 의혹사건으로 부각되었습니다. ...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사건의 진상에 관하여 단 한 점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사안위 실체와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고...」

한편 변호인단의 변론가운데도 주목할 발언이 있다. 변강우 피고인 등을 변론한 김일두 변호사는 검찰이 여론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이 아무리 국민의 의혹이 짙었다

하더라도, 또 재판이전에 이미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중론이 있었다 치더라도 재판부는 그러한 여론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이처럼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회범죄사건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두 차례의 개각과 집권당인 민정당수뇌진의 경질인사를 가져온 정치사건이다. 한편 정상적인 금융가와 지하의 사채시장을 발각 뒤집어 놓았고 6.28 및 7.3 조치 등 경제정책의 변혁을 초래케 한 원인이 되는 경제사건이기도 하다. 또한 이를 시종 보도하여 온 언론계로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숨겨져 있는 사실을 파헤쳐 보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절감한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의 논고장에서도 밝혔듯이 이처럼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유언비어가 떠돌아 민심을 흥흥케 한 일도 드물었다. 지난 5월 7일 검찰이 이-장부부를 40만 달러의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수사 중이라는 발표가 있고서부터 공판이 진행중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충격적인 화제거리를 제공하여왔다. 당국의 첫 발표부터가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으며, 그 후로는 향간의 낭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미니컴의 위세가 매스컴의 자리를 차지한 듯 보였다.

초기에는 대부분의 유언비어가 사실로 밝혀졌으며, 뉴스, 소스에 접근을 하지못한 취재기자들은 외곽취재밖에 할 수 없었고 이런 유언비어의 사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취재와 보도의 전부이기도 했다. 때문에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추측보도가 나왔고 배후관계를 암시 유도하는 아슬한 선을 넘기도 했다. 검찰수사는 사건의 진상규명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유언비어나 의혹을 해명하는 수사진전을 보였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검찰총장의 인솔아래 텔레비전 공청회에 나와서 수사 내용을 공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상상도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것도 역사에 남을 일이다. 엄청난 유언비어와 억측이 나돌아 민심수습책의 일환으로서 취한 응급조치였겠지만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할 것이다. 또한 주역인물이 이철희로 바뀌는 과정에서 갑자기 클로즈업된 과거의 전과사실 등의 경력과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생활이 공개 폭로되었다. 어떤 소수에 의해서 그것이 흘러나왔건 간에 이를 그대로 보도한 신문의 태도는 정당화되는 것인지도 문제삼을 만하다.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전혀 없는 장여인의 이혼한 두 번째 남편의 이름, 직업 및 결혼생활 등이 밝혀지기도 했고, 친정식구들의 이름도 공개되었다. 검찰이 먼저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임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는데 보도기관에서조차 이를 여과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한발 앞서가기도 했다.

이-장부부의 결혼식명단의 공표문제는 앞으로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결혼식광경의 필름과 하객명단을 검찰이 갖고있으며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선심을 쓴 것은 당시의 정치권 법무부장관의 국회에서의 증언이었다. 지난 6월 1일 국회법사위에 하객명단이 의원 앞에 1부씩 서면으로 제출되었다가 의원들의 열람 후 회수되었다.

정장관은 위원회에 개인적 친분관계로 의례적으로 참석했던 인사들의 명예를 위해 명단의 비공개를 요청 했고 위원회는 공개여부를 논란 끝에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2 일자 일부 조간신문에는 하객일부의 한글이름이 발표되었고 일부 석간에는 전원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명단을 공개한 신문에서는 단서나 「알림」 을 통해 명단게재의 사유를 밝혔다. 명예훼손의 우려나 프라이버시의 침해라는 측면보다도 국민의 알 권리 즉 공공의 이익을 앞세운 까닭을 설명했다. 그 후로 실제 참석하지 않았던 동명이인이 엉뚱한 피해를 입었다거나 또는 개인친분으로 의례상 참석했을 뿐이라는 정치인들의 해명가십이 뒤따랐다. 커다란 의문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명단공표로서 국민의 의혹이 더해졌다거나 또는 덜해졌다는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명단이 어음사기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증거자료로 법정에서 채택되지도 않았다. 명단을 알고자 한 의도에 호기심과 흥미 이외의 어떤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알고 싶은 욕심이냐 국회의원이냐 독자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것을 충족시켜 준 검찰이나 신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법사위는 둘째 치고 신문만은 명단공개 사유의 발표만으로 면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신중하게 대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독자적인 판단을 했었느냐, 독자의 호기심에만 지나치게 영합한 것이 아니었느냐, 선의의 제 3 자가 피해를 본 것은 어떻게 보상될 것이냐는 등의 문제점 등은 공공의 이익과 저울질해가면서 따져볼 만한 것이라고 믿어진다.

2. 윤노파살해사건과 고숙종씨의 무죄

서울 원효로 1 가 윤경화씨(75)집에서 81 년 7 월 22 일 밤 윤씨와 가정부 강이연 양(19), 양녀 수경양(3) 등 3 명이 살해되었다. 사건발생 26 일 만인 8 월 17 일 조카며느리인 고숙종(46) 씨가 진범으로 구속되었다. 82 년 2 월 1 일 서울형사지법의 일심판결은 고문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정황증거도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82 년 6 월 10 일 서울고법에서의 2 심판결도 1 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임의성은 있으나 신빙력이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범행을 인정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여인은 구속 3 백 4 일만인 6 월 17 일 보석으로 출감하여 자택에 돌아왔다.

이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언론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쌍방을 모두 지나치리만큼 명예훼손,또는 사생활을 공개했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윤씨의 과거경력도 모두 들추어졌고, 처자식이 있는 연하의 남자와 비밀결혼을 했을 때의 사진까지 게재하는

과잉보도를 했다.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수사에 임했던 검찰이 애당초 염두에 두지않고 강제수사를 강행했던 것과 궤를 같이하여 범인이라는 전제하에 혈족범죄를 규탄하는 사실까지 나왔다. 노인과 어린아이까지도 것처럼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인면수심을 개탄도 했다.

고씨의 친정과 출신학교도 알려졌고 미성년인 4 자녀의 이름도 밝혀졌다.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위로 두 딸은 대학을 중퇴했다. 본인 자신은 온몸을 발가벗기우고 짓밟히는 고문을 당하여 허리를 못쓰는 등 병고에 시달리고 있다. 남편 윤영배 씨는 「그동안 아내와 가족들이 검찰과 경찰에 당한 피해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린 후에야 밝혀졌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아물었다. 집으로 돌아온 고여인은 담당변호사를 통해 이땅에 사법적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씨에 대한 무죄판결은 경찰의 욕감 또는 심증수사의 폐단과 자백지상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며 고문수사의 물증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방향을 잘못잡았던 일선 경찰기자의 취재와 보도태도는 수사에 개가를 올렸던 경찰수사관의 공과와 일치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영웅 형사의 예금증서 절취사건이 밝혀지면서 사태는 급선회했고, 공판이 시작되면서 과열했던 이 사건의 보도는 비로소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3. 박상은양 피살사건과 두 해외연수동기생

이 사건은 81년 9월 22일자 조간에 처음으로 보도되었다. 부산에 주소를 둔 여대생 박상은 양이 미전입상 시상식에 참석하러 서울에 올라와 오빠집에 묵고 있었는데 18일 밤과 19일 새벽 사이에 살해된 시체로 강남구 여관근처 야적장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치정살인사건으로 보고 박양과 여름방학동안에 함께 미국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남자 친구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알맞은 요소가 고루 갖추어진 범죄사건이었다. 반지와 현찰이 없어졌고 목덜미에 치름이 남겨져 있었다.

신문과 방송은 금방 과열경쟁에 돌입했다. 피살자의 가정환경과 사생활이 모두 노출되었다.이성관계가 복잡하고 자유분방한 것으로 표현되었으며 정액검출 운운의 부검관계 기사도 있었다. 유력한 살해용의자를 해외연수동기생 중에서 물고 있는데 10여일 이상을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수사 중임이 알려졌다. K 대학 3년 모군을 진범으로 판정,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까지 진전되었다. 이보다 1주일이나 앞서 어떤 신문은 「장경수(21) 군이 범행을 자백」이라고 성급한 보도를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그러나 16일동안이나 경찰의 시달림을 받았으면서도 장군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죄를 입증할만한 물증 등 직접증거가 없으므로 검찰은 경찰이 품신한 구속영장신청을 10월 6일 기각결정했다. 장군은 즉각 석방되어 귀가했다.

언론은 일제히 경찰의 수사태도를 비난하는 기사와 논평으로 포문을 열었다. 임의동행과 불법구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수사혐의를 위해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81년 10월 28일자로 장경수 군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한 5개지에 대해서 비공개경고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강령에 의한 「용의자에 관한 보도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경찰도 수사의 미스를 자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그로써 일단락이 지어졌다.

그런데 새해 들어 서울지검동부지청은 박양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다가 새로운 용의자를 역시 해외연수동기생 가운데서 찾아냈다. 자가용차량을 이용한 범죄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재파군을 1월 16일 연행한 후 전격적인 자백을 받아내어 구속했다. 언론기관의 보도태도는 장군의 경우의 되풀이가 안되도록 조심했다. 검찰은 6월 21일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7월 9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여 또 한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검찰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다는 관례를 굳게 믿어온 검찰의 치명적인 패배였다. 재판부는 자백의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보강증거들이 범행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하지만 신빙성은 인정못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군이 겪은 정신적·육체적 수모와 고통, 그리고 학업의 지장 등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겪은 괴로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강력사건의 수사가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는 수사당국자의 아쉬움과 걱정도 문제점으로 드러났지만, 설혹 진범을 잡아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인권을 유린당해서는 안된다는 본보기가 더 크게 돋보인 사건이다. 박양 피살사건은 두 남자대학생을 희생시키고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만 것이다.

III. 사건기사의 특징적 유형과 보도성향

최근에 구미의 매스컴이론이 도입되긴 했지만 언론계의 실무부서는 그 조직이나 운영 면에서 일본을 모델로 삼아 비슷하게 닮아가며 발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범죄사건의 취재나 보도의 실체가 구미계통보다도 일본의 양태와 매우 흡사하다. 그 위에 우리나라의 특성이 가미되어 한국형 사건기사의 정형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육하원칙과 신원공개

기자의 기본상식이며 취재의 기본 원칙인 육하(5W-H)원칙에 너무 집착하는 느낌이다. 이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면 기사를 작성못하는 것으로 인식이 굳어져 있다. 또한 육 하에 해당되는 조그마한 사실이라도 기사에 모두 포함시켜야만 만족을 하는 철저한 버릇이 길러졌다. 것처럼 「남」 (타사 타지의 타기者) 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알아서 기사화한다는 것이 경쟁에서 이긴다는 신념에 젖어있는 것이다.

이런 과잉집착과 경쟁심이 사건기사에서 선정적인 보도를 부채질하고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를 남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사건의 핵심이나 진실을 전달하는데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기법을 익히지 못한 때문이다. 자칫 잘못 제거했다가는 낙종 또는 취재미달의 불호령이 웃사람으로부터 떨어지기 십상이다. 앞에 인용한 사건에서도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친척이나 자녀들의 이름과 주소가 마구 공개되었다. 81년 6월 서울남부지원탈주 사건에서 범인들의 내연의 처에 대한 신상명세서가 지나치게 밝혀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카바레의 몇 번 호스티스였으며 남자관계가 어떠했다는 것까지 보도됐었다.

신문윤리위의 자율심의 결정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신원공개에 관한 것이다. 수사상의 필요에서 아직 혐의만 두고 있거나 참고인으로 연행조사하는 등 내사단계의 용의자에 대한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 5공화국 헌법에도 명문화한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에 근거를 둔 것이며, 1961년에 제정된 신문윤리실천요강 「타인의 명예와 자유」 장 3항에도 같은 내용을 엄수하도록 규정했다. 동 2항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지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금하도록 규정했다. 동 4항에는 미성년자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및 봉육한 부녀자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누구라도 추정할 수 없도록 서울의 경우는 동명만 표시케 하는 등 세부지침까지 정해졌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67년 9월 6일자로 용의자에 관한 보도기준이 정해졌다. 「헌행범 또는 현저한 증빙이 있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용의자의 주소·성명·사진·직업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피의자를 명확한 증거없이 진범이라고 인정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서의 사례 중 장경수 군의 이름·사진 등을 공개한 것이 대표적 위반사례가 된다.

이밖에도 범행방법을 상세히 보도하는 것과 같은 것은 공공의 이익이 되지않는다. 오히려 모방심리를 자극하고 악용될 가능성이 짙다 할 것이다. 무슨 약을 얼마큼 먹고 죽었다는 음독자살 또는 독살의 수법을 보도하는 것도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이다. 범죄의 정황적 요소를 보도함에 있어서는 사회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선의 취재기자는 물론이지만

데스크나 편집자는 많은 기사의 소재가운데 취사선택의 신중을 기하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무엇이 보도할 가치가 있는 기사냐’를 가리고, 이것이 보도된 후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연후에 비로소 정확한 사실을 기술하여야 한다.

세기적인 허위보도사건으로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 지의 「지미의 세계」가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은 역시 미국이었기 때문이라는 느낌이 든다. 한국에서 제니 쿡 기자가 이와 같은 기사를 썼다면 신문에 결코 실리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름 · 주소 · 사진이 없는 기사를 데스크에서부터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육하원칙을 무시한 기사가 살아남아날 리 없었을 것이다. 여담이지만 이 기사가 보도된 후 워싱턴시경국장이 쿡기자를 앞세우고 마약중독자 지미군을 찾아나섰으나 못찾았다고 한다. 전 경찰과 흑인가의 정보망을 동원했어도 나타날 리가 없었다. 우리 같았으면 이미 그때 쿡기자는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어진다. 폴리처상을 받기 이전에 말이다. 워싱턴 · 포스트 지가 이 허위보도로 해서 실추된 위신을 성심성의를 다한 정정보도로 만회하였다는 것을 또한 기억할 만하다.

2. 인권의식과 범죄와의 관계

「지미의 세계」기사가 어느 특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거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를 한 사실은 없다. 기자의 허용심을 만족시킨 허위보도로써 사회의 공기를 이용해서 독자인 시민을 우롱한 것뿐이다. 여기자 제니 쿡은 직장을 잃은 것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미국에서 사건보도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란 흔하지 않다. 우리와 같은 자율적인 신문윤리위나 또는 언론중재위 같은 기구는 없지만 「의법조처」가 합리적으로 잘 되어있다. 신문보도로 해서 명예나 권리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면 제소함으로써 해결이 되는 길이 열려있다. 실제로 이런 소송사태까지 가기 이전에 당사자합의에 의한 원상회복의 조치로 해결이 되거나 또는 제소거리가 되지 않게끔 기사작성에 소홀함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가 미국의 신문에 비해서 다른 점은 바로 그네들이 걱정하지 않는 점을 우리는 문제 삼고있는 단계에 있다는 후진성이다. 곧 준법적인 인식이 박약하다는 점이 될 것이다.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저지르는 잘못의 타성인 것이다. 피의자에 대한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사건보도에 있어서의 선정적인 상업성의 발취는 일본 신문들의 단점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수사단계의 기사 비중보다도 재판기사가 중요하다. 재판은 배심원제로써 우리의 재판과정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수백년동안 민주주의에 입각한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것과 법조문에 명문으로 강조하고 있어도 좀체로 실천되지 않고있는 사회와의 격차는 엄청난 것이다.

살인범일지라도 보석이 허가될 만큼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는 미국사회와 사소한 교통사고에도 구속부터 해놓고 보는 우리의 사법관습은 그대로 보도의 경우에까지 확산 적용된다 할 것이다. 긴급구속 또는 임의동행 상태가 무한정 계속되어도 조금도 이상스럽게 여기지 않을만큼 관대하다. 국가의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고 적정하게 행사가 되고 있느냐는 것은 아무리 감시를 받아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법률지식이 없는 피의자가 체포되었을 때부터 변호사의 선임권을 행사하거나 수사에 대항하여 묵비권 등의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어있지 않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 198 조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고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주의의무규정이 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은 실례를 앞에 열거한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사건보도와 피의자의 인권옹호에 관련된 법규는 헌법을 비롯해서 적지 않다. 헌법 제 20 조 2 항에는 언론출판에 의해서 명예와 권리를 침해 당한 피해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공적책임의 한계를 명시해 놓았고 주의의무도 규정했다. 그밖에 형법, 민법, 소년법, 가사심판법 등에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상세하고도 광범위하게 규정해 놓았다. 이러한 법규만이 아니라 언론인에게 있어서의 성전이며 일상업무의 좌우명이라고 할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이 있다. 때문에 적용범규가 지침이 없어서 위법이나 탈선을 몰랐다는 변명은 성립되지 않는다.

단지 법과 규정은 그것대로 있고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별도로 존재하는데 문제가 있다. 장경수 군의 경우에서 장군의 부친은 두개의 소송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경찰을 상대로는 불법감금문제로, 범인으로 한정보도 한 몇 개 신문사를 상대로는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려고 결심했다가 포기하고 말았다. 「싸워보았자 실익이 없다」 「꼭 참고 좋게 지내는 것이 좋다」,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등이 포기이유일 것이다. 언론기관을 상대로 명예훼손혐의의 송사가 벌어진 전례를 찾을 수 없다. 어떤 여배우가 1 억 5 천만원의 배상청구의 소송을 했다가 취하한 전례가 있을 뿐이다.

만일 언론기관이 보도의 잘못으로 피소되고 그때마다 막대한 금액으로 배상한다거나 또는 정정사과보도를 하게 된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기사작성과 심의과정이 지금보다 엄격해질 것이고 고문변호사를 두게 될 것이며 과실자에 대한 문책인사가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장군의 부모처럼 제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현실의 언론을 오히려 나태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있는 셈이다. 아직은 사법기관이나 언론기관이나 그리고 피해자 자신들조차도 한마디로 인권의식이 미약하고 개인의 인격권, 권리의식 등에 대해 등한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명예훼손 또는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언론기관을 상대로 제소가 활발하다고 한다. 우리가 것처럼 활발하지 못한 것은 침해 사례가 적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법적 보장이 미약하고 법적지식이 미약하여 합리적으로 처리 운용할 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발족된 후 82년 7월 31일까지 접수된 중재신청사례는 총 51 건이었고, 매 체들이 총 80 회에 걸쳐서 중재대상이 되었다. 중재대상 중 휘하가 28 회에 35%이고, 합의가 21 회에 26%에 불과했고, 불성립이 33%인 26 회였으며, 피신청인인 보도기관의 불성실한 출석불응태도나 중재위원회 밖에서의 막후 절충으로 타협을 본 것이 많았다는 사실은 인권옹호의 차원에서 결코 몇몇한 일이 되지 않는다.

3.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사건보도에 있어서 대중의 호기심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명분과 확증이 있을 때는 면책이 된다. 이때의 한계와 균형을 잡아 조화있게 보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공공의 이익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고의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특정인물이나 단체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 하겠지만, 제작상의 실수라던가 공공의 이익이 되는 줄 믿고 보도했을 때는 처벌하기가 어렵고 시비를 가리기도 힘들다. 때문에 공익과 인권을 조화있게 추구하는 일이 사건보도에 있어서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전 울산실업 대표 신선호 씨의 사진을 책 표지에 사전승인 없이 실었다 하여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진 초상권에 대한 첫 판결이 있었다.피의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법정내에서의 촬영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사진촬영을 허가하게끔 법정규칙이 개정된 것이다. 피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뜻에서는 진일보 된 조치이지만 국민의 알 권리나 보도의 자유면에서 볼 때는 불편한 제한조치인 셈이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명예훼손 등의 개인권사항이 법률 또는 학술용어로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용어로 근접하는 과정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또한 사회현상의 전환인 것이다. 언론의 정보청구권이라던가, 편집의 비밀을 보장하는 증언거부권 같은 권리의 주장에 앞서 언론은 정정보도요구와 반론권의 처리 등의 의무사항에도 겸허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여론재판이니, 신문재판이니하는 말이 법정에서까지 발설되는 까닭에 대해서도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장부부 사건만해도 일부 독자들은 공판기사가 재미없다고 외면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의 보도 때 알려진 것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기소도 되기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발표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조문은 사문화되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다. 피의사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친절히 발표될 정도이니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불합리한 조항은 고쳐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신문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보도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회의 인권옹호는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격으로 사회는 밝고 깨끗한데 신문만이 어둡고 더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회의 주석구석에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정의사회구현의 봉사자요, 실천자인 수사기관에서 만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이것이 선결될 때 언론기관의 침해사례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물론 가만히 앉아서 굴러들어올 복덩이는 아니다. 센세이셔널한 사건에 접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는 경쟁속에 빠질 때마다 종래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보려는 작은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 그것은 바로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이라는 척도로 기사를 재어보는 정성이면 족하다. 거창한 이론의 원용이나 남의 평가보다도 자성하는 언론인의 독자적인 실천만이 긴요한 시점인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의 인권도 존중하는 조화와 균형의 기준이 곧 공공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도 당장의 이익만이 아니라 먼 훗날까지도 변하지 않을 공공의 이익이어야 할 것에 또한 유의해야 한다.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 조선일보 사회부장 동 주일특파원, 동 편집국장, 논설위원 역임

- 현재 조선일보논설주간